

인간사회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홍준복 의원 대표발의)

발의년월일 : 2014. 7. 8.

발의자 : 홍준복,전주호,나철숙,김정택,박영근
부회,공석진,김동규,김동수,김재국,
김지희,박은경,서준모,조관숙,유병나,
신성환,공태권,이민근,이사숙,전승원
주미희 의원(21인)

의안 번호	2529
----------	------

개정이유

○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는 대법원(2012주 176, 13.5.23) 결정에 따라,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지원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.

주요론자

○ 의정회 보조금 지원항목으로 공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충당 부분을 삭제하고,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「인간사회의정회법」 제4조 제4호를 개정함. (제4조)

개정제한 : 없음

신·구조문대비표 : 없음

참고자료 : 없음

안산시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안산시의회(이하 "의정회"라 한다)"를 "안산시의정회"로 한다.
제2조 중 "의정회"를 "안산시의정회(이하 "의정회"라 한다)"로 하고, "안산시의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"를 "안산시의회"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4조(보조금의 지원) 안산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「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